## 2017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7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김진아	860301-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7-16-26***	유***	일반	14,000
**7-90-58***	늘****	일반	8,800
**3-90-97***	동*****	일반	13,300
**3-10-68***	다****	일반	3,400
**9-22-71***	연******	일반	59,400
**4-96-10***	한****	일반	2,850,000
**2-91-00***	天 ******	일반	68,400
**5-01-00***	백*****	일반	17,280
**1-54-00***	박***	일반	16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3,050,58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3,050,58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공제 한도 : 본인・장애인・65세 이상 자・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일련번호: 20180201-39417932

